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0나202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0나20299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. 17 선고 2018가단9170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

담당변호사 김동하, 전찬우

피고, 피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

변론종결 2021. 12. 7.

판결선고 2022. 2. 8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. 17. 선고 2018가단91700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E 사이에서 2014. 4. 17. 파주시 F 답 3,886㎡ 및 G 답 3,503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임차권증여계약을 45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B에게 7,000,000원, 원고들에게 38,000,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(갑 10호증 내지 17호증, 을 21호증 내지 23호증)를 보태어 보아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따라서,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쓰거나 덧붙이는 부분

가. 고쳐쓰는 부분

- 1) 제1심판결문 4쪽 12행 ‘진정하기로’를 ‘진행하기로’로 고쳐쓴다.
- 2) 제1심판결문 7쪽 6행 ‘E에’를 ‘E이’로 고쳐쓴다.

나. 덧붙이는 부분

제1심판결문 7쪽 7행 말미에 “(E에게 소외 I, J에 대한 임차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, 그들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금전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도 매우 부족하다.)”를 덧붙인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